

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】

의안 번호	497
----------	-----

2024. 9. 5.
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8. 23. / 전해연 의원 등 9명
나. 회부일자 : 2024. 8. 23.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4. 9. 5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의회의 민주적인 회의 운영 및 절차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1조~제2조)
- 의회체험활동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- 의회체험활동의 지원사항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의회체험활동의 표창 및 홍보사항을 규정함(안 제 5조~제6조)
- 의회체험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윤선기)

-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-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의회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제4조 시의회 본회의장과 회의실 사용, 예산 범위 내 다과 및 방문기념품 제공, 체험 참여 학생이 15명 이상일 경우 학교장 요청 시 차량 지원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하고, 제5조 체험활동 우수기관과 청소년에게 표창을 줄 수 있는 규정 등을 마련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됨

4. 질의·답변 요지

-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

- 없 음

6. 심사결과

-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- 없 음